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가 이렇게 변경되었다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는 불량한 전기용품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당할 수 있는 감전, 화재, 재산상의 손실 및 신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제정되고 이에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 행령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올바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이 높고 사용이 빈번한 상품은 1종전기용품으로 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생산판매 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품목은 2종전기용품으로 전환하여 신고만으로 생산 판매를 할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의 목적을 충실히하고 업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일 및 시행일 94. 9. 17)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용품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부품 또는 부속품을 반드시 승인표시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한 전기용품의 대상을 축소하였다.

종 전 (6품 목)	개 정 (1품 목)
방전동기구, 이발용의자, 전동랄곡기 및 기타의 전동식 농기구, 훨코일유닛, 광고등, 벨트콘베어	이발용의자

2. 전기용품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이 일부연장되었다.

제조 번호	제 조 구 분	형식승인의 유효 기간	비고
1	전 선 류	5년→7년	연장
2	퓨 우 즈 류	3년→5년	"
3	배 선 기 구 류	5년	변동없음
4	전 류 제 한 기	7년	"
5	소형단상변압기, 전압조정 기 및 방전동용안정기류	5년	"
6	소형교류전동기류	7년	"
7	전 열 기 구 류	3년	"
8	전동력용용기계기구류	3년→5년	연장
9	전 구 류	5년	변동없음
10	광원용용기계기구류	5년	"
11	전자용용기계기구류	3년	"
12	기타교류용전기기계기구류	5년	"
13	휴대발전기	3년→5년	연장
16	금속제전선관용부속품류	7년	변동없음

3. 1종전기용품에서 2종전기용품으로 일부전환 되었다.

제 조 구 분	적 용 대 상 품 목
배선기구류(정격전압이 600V이하(형광등용 소켓에 있어서는 1,000V이하)인 것으로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방폭형인 것 및 유입형인 것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개폐기 조작용스위치(정격전류가 30A이하인 것에 한하며, 제어용스위치와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2) 자동온도조절기 [전열장치로부터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동작하고, 점점을 기계적으로 개폐하여 온도를 조절하는 구조인 것(자동복귀형 온도과승방지장치를 포함한다)으로 정격전류가 300A 이하(전동기용인 것에 있어서는 그 적용 전동기의 정격용량이 37KW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하고 이 표에 규정된 품목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3) 접속기로서 다음에 개기하는 것(정격전류가 50A이하인 것으로서 극수가 5이하인 것에 한하고 타임스위치 기구 이외의 점멸기구를 가진 것을 포함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하고 소켓에 있어서는 전동기구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사로우젯트 ② 당김로우젯트 ③ 기타로우젯트
소형교류전동기류(극수변환용, 방폭형, 방적기계용, 금속암연기계용 및 의료용 기계기구용의 특수구조인 것 또는 전동재봉기이외의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1) 기타 단상전동기(정격전압이 100V이상 300V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열기구류(정격전압이 600V이하이고 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것으로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상식물용히타 (2) 전기조끼 (3) 전기시트 (4) 전기온수보온기 (5) 전기체난의자 (6) 전기우유포트 (7) 전기수염깍기용탕비기 (8) 전기인두가열기 (9) 전기빗

제 조 구 분	적 용 대 상 품 목
	(10) 파마넨트기 (11) 타올휀통 (12) 수도동결방지기 (13) 라미네이터 (14) 옥수수튀김기 (15) 전기보온그릇 (16) 전기보온접시 (17) 전기가는기
전동력 용용기계기구류 (정격전압이 600V이하 로서 교류전로에 사용되 는 것에 한한다)	(1) 전기구두닦기기 (2) 전기살수기(정격소비전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하는 특수구조인 것 을 제외한다) (3) 전기깡통띠개 (4) 야채세정기(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 (5) 전기칼날갈개(정격소비전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한다) (6) 전기칫솔 (7) 등사기(긴폭이 420mm이하이고 짧은폭이 297mm이하인 것을 인쇄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서 정격소비전력이 300W이하인 것에 한한다) (8) 물수건포장기(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9) 전기문걸이(방폭형인것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10) 가정용전기체유기(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광원용용 기계기구류(정 격전압이 600V이하인 것 으로서, 교류전로에 사용 하는 것에 한하며, 기계기 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 를 제외한다)	(1) 8mm영사기(텔리비전용인것 및 광원으로서 키세논 아아크식 램프하우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반사투영기(정격소비전력이 2KW이하인 것에 한하며, 텔리비전용인 것 및 광원으로서 키세 논아아크식 램프하우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전자용용 기계기구류(정 격전압이 600V이하인 것 으로서 교류전로에 사용 하는 것에 한하며, 기계 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 조를 제외한다)	(1) 전자식살균등용안정기 (2) 전자식오존발생기용안정기

제조구분	적용대상품목
금속제 전선관용부속품 류(호칭지름 104mm 이 하의 강제전선관을 접속 또는 이들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동제인것과 방폭형인것 및 레듀사를 제외한다)	(1) 금속제카플링 (2) 금속제코넥타 (3) 금속제캡 (4) 금속제엘보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

제조구분	제외품목
전열기구류	가정용 온열치료기, 기타 가정용 전열치료기
전동력용용기계기구류	기타가정용 전동력 응용 치료기
광원용용기계기구류	가정용 광선 치료기
전자용용기계기구류	가정용저주파치료기, 가정용초음파치료기, 가정용초단파치료기
기타교류용전기기계기구류	가정용전위치료기, 가정용전격치료기

5. 형식승인을 받아야하는 품목으로 추가되었다(3품목)

제조구분	1종전기용품	2종전기용품
전열기구류	전기주름펴기	-
전동력용용기계기구류	전기정미기	-
전자용용기계기구류	-	전자식금전등록기

6. 형식승인 대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1품목)

품목	현행	개정
초음파세정기	정격 고주파 출력이 50W 이하인 것	정격 고주파 출력이 200W 이하인 것

7. 형식구분이 삭제 또는 간소화되었다

품명	형식구분(현행)		형식구분(개정)	
	요소	구분	요소	구분
무정전전원장치	정격용량	(1) 330VA 이하인 것 (2) 330VA초과 440VA 이하인 것	정격용량	(1) 300VA 이하인 것 (2) 300VA초과 400VA이하인 것

품 명	형식 구분(현행)		형식 구분(개정)	
	요 소	구 分	요 소	구 分
무 정 전 전 원 장 치	정 격 용 량	(3) 440VA초과 550VA 이하인 것 (4) 550VA초과 700AV 이하인 것 (5) 700VA초과 1KVA 이하인 것 (6) 1KVA초과 2KVA 이하인 것 (7) 2KVA초과 3KVA 이하인 것 (8) 3KVA초과 4KVA 이하인 것 (9) 4KVA초과인 것	정 격 용 량	(3) 400VA초과 500VA이하인 것 (4) 500VA초과 700VA이하인 것 (5) 700VA초과 1KVA이하인 것 (6) 1KVA초과 2KVA이하인 것 (7) 2KVA초과 3KVA이하인 것 (8) 3KVA초과 4KVA이하인 것 (9) 4KVA초과인 것
	축전지구성방식	(1) 기기내장형인 것 (2) 기기외장형인 것 (3) 기타인 것	삭	제
전 기 장 판 용 등 발 열 선	정격소비전력	(1) 100W이하인 것 (2) 100W초과 300W이하인 것 (3) 300W초과 500W이하인 것 (4) 500W초과 1KW이하인 것 (5) 1KW를 초과하는 것	삭	제
	발열선의 길이	(1) 10m이하인 것 (2) 10m초과 20m이하인 것 (3) 20m초과 30m이하인 것 (4) 30m초과 40m이하인 것 (5) 40m를 초과하는 것	삭	제
	발열선의 용도	(1) 전기장판 (2) 전기요 (3) 전기방석 (4) 기타인 것	삭	제
1. 아이스크림 후리자 2. 쥬우서 3. 쥬우서 믹서 4. 전기빙삭기 5. 후드믹서 6. 커피분쇄기	전 동 기 의 정격소비전력	(1) 30W이하인 것 (2) 30W초과 40W이하인 것 (3) 40W " 50W " (4) 50W " 60W " (5) 60W " 70W " (6) 70W " 80W "	정격소비전력	(1) 30W이하인 것 (2) 30W초과 50W이하인 것 (3) 50W초과 70W이하인 것 (4) 70W초과 100W이하인 것 (5) 100W초과 200W이하인 것 (6) 200W초과 400W이하인 것

품명	형식구분(현행)		형식구분(개정)	
	요소	구분	요소	구분
7. 전기정미기	전동기의 정격 소비전력	(7) 80W초과 90W이하인 것 (8) 90W초과 100W이하인 것 (9) 100W초과 200W이하인 것 (10) 200W " 300W " (11) 300W " 400W " (12) 400W를 초과하는 것	정격소비전력	(7) 400W를 초과하는 것

※ 형식승인 대상 품목 추가에 따라 “전기주름펴기”는 “전기스팀버스”란에, “전기정미기”는 “아이스크림후리자”란에 형식구분을 적용한다.

알림

회사동정 및 신제품소개 게재 안내

월간『가전시대』에서는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일환으로 회사동정 및 신제품소개를 다음과 같이 무료로 게재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회사동정 : 200자 원고지 5매이내 또는 보도자료
2. 신제품소개 : 200자 원고지 5매이내(제품 사진포함) 또는 보도자료
3. 제출처 :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9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전화 : (02)579-3291~5 팩스 : (02)578-3640
4. 원고마감 : 매월 20일까지